

교육인적자원부 생각은...

**사서교사 배치기준, '시행령서 규정할 문제'
'행정자치부에 사서교사 재요청' ...다양한 운영인력 시도교육감에 권고
출판계·도서관계 '시범 학교도서관' 구체안 나오면 '지원 검토'**



◎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기존 사서와 사서교사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법에서는 전문인력의 필요성만 언급하고, 정책적 수단(배치 규정)은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정책(총정원제) 및 예산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배치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문제라고 본다.

◎ 사서 교사 정원 문제는 교육부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소관이어서 어려움이 클 것이란 전망인데, 특히 최근 430여 명의 사서교사를 충원키로 했다가 전원 취소된 데 대한 학교도서관 관련단체나 시민단체의 불만이 크다.

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용수업을 포함한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430명의 사서교사는 충원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요구한 숫자이며, 현재 행정부에 다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계약직사서(일용직), 교과교사, 학부모도우미 등 다양한 운영 인력이 확보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2006년 이후의 인력충원계획 수립 시 사서(교사) 배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원래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 혹은 작년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발됐다. 올해 이 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내년 이후엔 대폭 사서교사를 확충하고 학교도서관 관련 예산을 늘릴 수 있는지...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 장서확충, 운영 프로그램 개발, 기타 운영지원 등의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배치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정책(총정원제) 및 예산문제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학교에 이같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는 분교를 제외하면 초·중등학교 수를 1만 826개 교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2,700억원 정도에 이른다. (연봉을 2,500만 원으로 계산)

◎ "근본적으로 사서교사와 사서의 역할을 인식, 구분하는 대학교육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학에서의 모든 교육과정은 대학의 장이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서교사와 사서의 교육과정 구분

도 대학에서 결정할 문제다.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나 상호 교류 등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나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김해 생림중학교와 김해도서관이 MOU를 체결하고, 김해도서관이 생림중학교를 지원하고, 생림중학교는 지역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이 외에도 학교도서관이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지역사회와 학교도서관과의 연계 및 상호 교류를 위해서도 15개 비영리민간단체에 '03~05년 동안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양자의 유기적 소통과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예컨대 기존 사서와 학부모 대표, 공공도서관 관계자, 지방정부 관계자, 교사, 학생 등이 참여하는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나 현재 교육부 내에 학교도서관 자문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에는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부모 대표, 시도교육청 장학사,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학교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문사항이 있으면 이 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의 관계는 문화부에 있는 정책담당자와는 수시로 연락을 하며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율하고 있다.

◎ 이번 좌담회에서선 시민사회단체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계, 그리고 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협의 내지 협조하여, 몇 개 학교를 선택해 시범적으로 학교도서관의 모델을 운영해 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구체적인 안을 주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

◎ 좌담회에서선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 사서교사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모든 학교에 도서관 운영 전담인력이 있고, 도서관 활용수업, 도서관 이용교육, 독서교육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이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용하는 학생이 수업시간 이외에 문화공간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 혹은 휴일, 방학 동안의 개방을 고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안과 밖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